2025년 제2회 김해연구원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선정결과 공고

2025년도 제2회 김해연구원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6월 20일

재단법인 김해



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

직종	직급	분야(주요직무) 수험번호 성당		성명
		• 문화예술 및 콘텐츠산업 분야	텐츠산업 분야 A002 최*운 회정책 분야 적격자 없음	
연구직	연구위원 (가·나급)	• 사회정책 분야		
		• 도시 • 방재 분야		

임용예정자 등록

- 가. 등록기간: 2025. 6. 23.(월) ~ 6. 25.(수) 18:00까지
 - ※ 근무시간 내 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- 나. 등 록 처: 김해연구원 경영지원실(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)
 - ※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: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-16
- 다. 등록방법: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본인 직접 등록
- 라. 제출서류(원본제출)
 - 임용예정자 등록원서 1부. (첨부서식)
 - 이력서 1부.(첨부서식)

- 학위증명서(학사/석사/박사) 각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주민등록초본 1부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
- 경력/재직증명서 1부
- ※ 응시원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(증빙자료 없는 경우 경력 미인정)
 - 1) 근무기간(상근여부 또는 주 근무시간 포함), 근무부서, 정규직 여부, 직급(직위), 담당 업무, 징계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,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기재,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서명(날인) 후 발급기간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
 - 2) 경력증명서에 주 근무시간 명시 안된 경우: 주 근로시간이 명시된 계약서 첨부(계약 자와 증명서 발급기관이 일치하는 경우에 인정)
 - 3)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 야 함.
 - 4) 응시원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
 - 5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상호 교차 검증하여 공통된 유효경력만 인정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- 자격·면허증 사본 1부
-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
 (연구실적(논문, 보고서) 증빙자료-연구책임자, 수행업무, 수행기간 등을
 확인할 수 있는 표지, 요약본 등의 사본)
- 학위논문 전문(석사/박사) 각 1부.
- 급여통장 사본 1부
- 명함판 사진 2매
- 채용 신체검사서 1부
 - ⇒ 「건강검진기본법」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면 가능, **공무원채용 신** 체검사서 발급 가능여부를 미리 병원에 문의한 후 검사 바람

(검사 시 사진 2매 필요, **발급기간 2일 정도 소요)**

- ⇒ 신체검사서 우측 상단 사진에 **압인 또는 계인** 필요 (검진기관에서 실시)
- ⇒ 6개월 이내 검사받은 사항을 재발급하여 제출 가능
- ⇒ 채용 신체검사서에 한하여 임용 후 제출 가능(단, 불합격시 임용 취소)
- ※ 2년 이내 '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' 제출로 대체 가능 (국민건강보험 발급)
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첨부서식)
-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1부.(첨부서식)
- 결격사유 부존재 본인 확인서 1부.(첨부서식)
- 비위면집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(첨부서식)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

3 임용예정자 유의사항

- 가. 임용예정자가 임용예정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으로 기간 내 반드시 임용후보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임용예정일은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, 합격자 통지 후에도 허위서류 제출, 채용신체검사, 범죄경력조회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·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다.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임용결격사유의 발생, 사직 등으로 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대로 임용(임용사유 발생시 개별통보) 할 수 있습니다.
- 라. 기타 임용예정자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김해연구원(☎055 -359-899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4 임용예정일

가. 임용예정일: 2025. 7. 1.(화) 예정 (대상자 개별 통보)

임용후보자등록

[인적사항]

 ○ 응시직종 :
 ○ 응시분야 :

 ○ 응시직급 :
 ○ 응시번호 :

 ○ 성 명 :
 ○ 생년월일 :

상기 본인은 김해연구원 직원 채용에 합격하였기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채용대상자로 등록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구비서류

- 임용예정자 등록원서 1부. (첨부서식)
- 이력서 1부.(첨부서식)
- 학위증명서(학사/석사/박사) 각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주민등록초본 1부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
- 경력/재직증명서 1부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- 자격·면허증 사본 1부
-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(연구실적(논문, 보고서) 증빙자료-연구책임자, 수행업무, 수행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, 요약본 등의 사본)
- 학위논문 전문(석사/박사) 각 1부.
- 급여통장 사본 1부
- 명함판 사진 2매
- 채용 신체검사서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첨부서식)
-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1부.(첨부서식)
- 결격사유 부존재 본인 확인서 1부.(첨부서식)
- 비위면집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(첨부서식)

20 . . .

임용예정자: (인)

이 력 서

직급

직종

1. 인적사항			
성명(한글)		성명(한자)	
주 소		생년월일	
연 락 처	· (전화) (휴대폰)		(E-mail)

2. 학력사항			
학교명	재학기간(년월일)	전 공 (세부전공)	비고
	~	()	
	~	()	
	~	()	

3. 경력사항 (채용분야 관련 경력만 기재)				
근무기간(년월일)	근무기관(부서)	근무형태	최종직위(급)	담당 업무

71	명칭(자격, 특허, 어학 수상 실적 등) 및 내용	기관 및 일자	기 타
기 타			
실			
적			

※ 경력, 기타실적는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자료만 작성하고, 채용분야 관련 경력,만 기재

위에	기재하	사항은	사싴과	특립이	없습니다.
11 ~ 11	111111	710 -	기근기	201	ᆹᆸᅴᆡ

2025년 6월 일 <u>(</u>서명)

재단법인 김해연구원장 귀하

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

본인은 『김해연구원 직원 채용시험』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(학위, 경력,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)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 또한 본인이 서명·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)

재단법인 김해연구원장 귀하

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

(재)김해연구원에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5조에 의거하여 직원 채용 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 집하고 있사오니 정보의 수집·활용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

[1]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

수집항목	수집 및 이용 목적	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성명	응시자 본인 확인	
전화번호/전자우편주소	합격통지 및 안내 등에 활용	「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
응시원서, 경력·경험사항, 자격·면허 소지사항 등 증빙서류	채용절차 진행 전반에 활용	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, 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

동의함 🗆

동의안함 🗆

[2]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(※ 최종합격자 선정절차에 한해 취급)

※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
수집항목	수집 및 이용 목적	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<u>주민등록번호</u>		
각종 자격번호	▶채용과정 내 자격・면허・경력 등 조회 확인▶신원조사・신원조회 등 조회 기초자료 확보	<u>「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</u>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
등록기준지		<u> </u>

※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, 고유식별번호를 수집,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

동의함 🏻

동의안함 🗆

[3]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(※ 최종합격자 선정절차에 한해 취급)

제공처	제공목적	제공항목	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<u> 경찰청, 검찰청</u>	범죄경력(결격 사유) 조회	주민등록번호	「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<u>감사원, 행정안전부,</u> 지방자치단체	감사 및 징계전력 자료	주민등록번호, 주소, 등록기준지	<u>채용 종료후 180일까지</u>

※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일

본인은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

동의함 🗆

동의안함 🗆

2023년

월

성명 :

서명 또는 (인)

(재)김해연구원장 귀하

결격사유 부존재 본인 확인서

본인은 (재)김해연구원 직원 채용을 위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
채용 결격 사유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
- 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- 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
- 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10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11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 -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- ※ 임용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4년 월 일

작성·확인자: (서명)

(재)김해연구원장 귀하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-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(기간제 포함),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-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<u>공공기</u> 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<u>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</u>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공공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1. <u>공직자</u>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
 ※ 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및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<u>부패행위</u> 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
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
 * 부패행위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<u>부패행위 비해당</u>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、여비 부당수령 → <u>부패행위 해당</u>
3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u> 된 사실이 있는지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</u>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4-3. 권익위법 ('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<u>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</u>) 해당 여부 해당 🗆 🛍 🗆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(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)

- 9 -

일

(서명)

2024 ! 월

지 워 자